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사·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공소청법」(법률 제21490호, '26.3.24. 제정, '26.10.2. 시행)과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21491호, '26.3.24. 제정, '26.10.2. 시행)됨에 따라, 관련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2개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
법률」의 제정에 따른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
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

제1조(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의
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 중 “검찰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중 “○○지방검찰청○○지청”을 “○○지방공소청 ○○
지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직권에 의한 청구) ① 영 제 9조제5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제3조(직권에 의한 청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4. (현행과 같음)
5. <u>검찰</u>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.	5. <u>중대범죄수사청</u> 또는 경찰관서의----- -----.